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야만 하나

김 남 용

〈본 협회 전무이사〉

우리 주변에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간혹 있다.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아들여지고 있는 표준적인 지력(知力)을 상식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현재 우리 낙농계에 관계된 몇 가지 사실들도 이러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다.

아이스크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축산업 면세신청 문제, 그리고 국산 대용유의 품질향상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아이스크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우유지방이 6% 이상 함유되어야만 하고 우유지방이 6% 이하 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은 빙과류이다. 즉 아이스크림은 우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그것도 우유지방이 6% 이상 함유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특별소비세는 우유가 조금이라도 함유되면 부과되고 반대로 우유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은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자라나는 2세들의 간식으로서 은연중 어린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유가 함유되어 영양가가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값이 비싸서 사먹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형편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물이나 설탕과 색소를 혼합 제조한 빙과류는 특별소비세의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값이 저렴하여 많이 사먹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분이 많이 함유된 것은 값을 싸게하도록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고 반대로 영양분이 적거나 없는 것은 가능한한 사먹지 않도록 유도하는 뜻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책정하는 것이 2세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할 상식이 아닐지. 어느 영양학자가 말하기를 우유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케 한 것은 어린 이들의 건강을 해치고자 하는 망국론자의 소행이라고 까지 격분해 하던 것을 보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부당성을 관계당국에 전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푸르게 자라나는 이 나라의 꿈나무들에게 설탕과 색소만을 혼입 제조한 빙과류를 계속 먹여야만 될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축산업 면세에 관한 신청문제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축산업을 개시하여 5년간은 소득세의 20%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종전의 100% 면세에서 50%의 면세로, 그리고 다시 20% 면세로 낮춰진 것인데, 면세에 있어서도 면세신청을 해야만 면세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면세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혜택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영세낙농인들이 이 면세신청을 제대로 못하여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 예가 상당수에 달한다. 뒤늦게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면세혜택을 받고자 노력한다. 목장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낙농가들은 절실히 실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방에 드나들면서 정보도

알아내야 하고 행정부를 찾아서 진행중인 축산 행정에 관한 지식도 익혀야 되고 세무상식도 습득해야 되고 …

이리하다 보면 자연히 목장의 일은 등한시되고 만다. 주위 여건이 낙농인을 목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으니 다방이다 낙우회 사무실이다 하며 모여 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낙농인이 분주하게 나다니는 것을 우리가 처한 현실적 여건에서 생업의 영위를 위한 낙농업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송아지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국산 대용유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품질 면에서 외국산보다 뒤진다 하더라도 국산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애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는 선결조건으로서 국내 기업이 실수요자를 위해서 모든 성의를 다한다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용유는 실수요자인 낙농가를 위한 제품인지 아니면 생산업체를 위한 것인지를 낙농가입장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대용유 말이 나온 김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용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용유는 '60년대에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많은 양이 외국에서 수입되었고 일부에서는 송아지 먹이가 되지 않고 식품용으로 둔갑을 하는 바람에 낙농가 실수요자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제한하여 수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작용이 없지 않아 농협에서 국제입찰에 의해 수입해다가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왔었다. 이 때에 국산 대용유가 생산되기에 이르러 수입 품과 국산품을 병행하여 이용토록 하였으며 연간 2,800 M/T의 양이 분기별로 수입되곤 하였다. 그리고 국산 대용유 생산업체도 하나 둘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80년도에 우유의 잉여가 생겨나자 낙농인들은 애써 생산 납유한 우유의 대금을 제시기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유업체에서는 재

고의 누증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어 전(全) 낙농계에서 우유 소비대책을 강구하기에 부심하였다 학교 우유급식의 재개, 농업 관계기관에서는 우유로 접대하기, 식품에 우유를 더 넣어 제조할 것, 그리고 종전에 수입 자동승인품목에 들어 있던 유당을 수입감시 품목으로 둑는 등의 범국 가적 우유 소비운동을 확대해 나갔는데 이 때에 우리 낙농인들도 우유소비의 일익을 담당코자 송아지에게 대용유를 먹이지 않고 모유를 먹인다는 취지에서 대용유의 수입중지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 후 우유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 우유가 부족하게 되자 식품중의 우유함량도 감축조치를 하고 계다가 소비자를 위하여 부족되는 우유를 수입하기에 이르렀으나 대용유만은 계속 둑여 수입이 되지 않다가 드디어 지난 해에 1개 목장당 1포도 채 안되는 양으로서 총 500M/T 이 수입되었다. 대용유 1포는 송아지 1마리가 먹을 양이고 보면 수입물량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금년도의 대용유 수입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산 대용유는 어떠한가.

국산 대용유가 국산 우유를 전연 사용하지 않고 탈지분유와 유장분말 등을 수입해다가 혼합하여 제조하고 있으며 판매가격 면에서도 수입 품보다 훨씬 비싼데다가 그 품질 또한 낙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가 못되고 보면 낙농가를 위해 생산되는 국산 대용유가 아니라 오히려 국산 대용유를 위해 낙농가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지 않는지 심히 의아스럽다.

현재 대부분의 사료 제조업체에서는 대용유의 제조허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고 기존 대용유 제조업체는 신규허가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도록 갖은 수단을 구사하고 있어 이러한 압력속에서 과연 우리 낙농인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왜 우리 낙농인은 희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로, 우리 낙농인의 철실한 필요성을 반드시 요구해야만 관철되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하 66페이지에 계속)

○ 조기이유(早期離乳)

제한사육의 경우 3~4개월 경에 젖을 떼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① 번식우가 전유기에 들어가므로 사료 비용이 절감된다.

② 번식우의 전유기간이 길면 회복기간이 충분하므로 차기 분만에 효율적이다.

③ 송아지 체중이 100~300kg 정도의 빠른 성장기에서는 체중 1kg 증가함에 따라 사료 5.0 kg 정도를 소비한다. 따라서 이 때의 증체 비용은 어미소가 에너지를 섭취해서 송아지용 우유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

○ 조기이유의 문제점

① 적절한 사양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단백질 결핍증에 걸리게 된다.

② 소화가 쉬운 유단백질에서 소화가 어려운 식물성 단백질이나 균체단백질로 먹이를 바꿀 때 어린 송아지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이와 같은 사료에 적응력을 갖는다면 별문제점이 없다.

③ 이유충격 : 이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chlorotetracyclin 500 mg 또는 oxytetracyclin)를 사료에 첨가 급여 한다. 또한 이유하기 2주일 전에 IBR, PI-3, Leptosirosis, 7-Way clostridium 같은 것을 예방 접종한다.

증체량 향상을 위해 36mg의 Ralgo를 주입한다.

분만기에 있는 소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분만의 정후가 보이면 분리된 분만실이나 목아지에 격리시켜 분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초산이나 2산우의 경우 너무 큰 체구의 종모우와 교배되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체성숙에 완전히 달한 개체만이 체구

가 큰 품종이나, 대록성 수소에 교배함이 좋다.

또한 비타민A의 수준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사료의 의존도가 높을 때 기인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비타민A는 전유기간 중에는 두당 1일 30,000IU, 그리고 비유기간 중에는 40,000IU를 급여하여 비타민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만약 비타민A가 사료로 급여되지 않았다면 분만 60일 전에 2백만IU를 주사한다. 생후 송아지가 허약하거나 폐사하는 경우는 어미소의 비타민A 결핍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분만전에 하리용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분만시 문제점이 많이 줄어 든다. 그래서 몇몇의 경영자들은 분만전에 밀기울을 급여를 증가시킨다.

아리조나대학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생후 100만IU의 비타민A를 주사하며, 태출을 요오드 용액에 담궈서 박테리아의 감염을 예방했다고 한다.

생후 초기의 송아지 설사는 폐사율을 상당히 높인다:

정상적인 발정과 배란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교배전에 다음과 같은 사양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만 60일 전에 표 4에 있는 것 같이 TDN 급여 수준을 증가시켜야 한다. 더욱이 장기간 나쁜 영양하에 처해 있었다면 80~90일 정도로 증가 급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송아지는 커지고 어미소는 심히 약하게 되어 난산의 결과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료 급여는 0.75%의 인산, 0.75%의 칼슘, 70~75%의 TDN, 12~14%의 조단백 등을 함유한 농후사료를 1일 두당 3~4kg을 급여하고, 전체 사료의 15% 정도의 밀기울이나 겨를 함께 급여한다. <홍보실, 장만의譯>

(이하 22페이지에서 계속)

젖을 달라고 울어야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젖을 달라고 울어야만 젖을 먹을 수 있는 아기와 울음소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 젖을 먹는 아기를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어린이가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고로 그 보육방법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배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리기 이전에 어머니

의 예리한 시간판단이 아기를 천진스럽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젖달라는 낙농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아직 뼈가 아니라고 설득하지만 한번 시작한 울음을 그치질 않는다. 젖을 먹기 전에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진맥진하기 전에 젖을 먹여야 하겠는데. 현명한 우리 어머니이시라면.